

총 무 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02)720-2172 / 전송(02)720-2171

문서번호 복무 12140 -

시행일자 1997. 9.

경유

(제 1 안)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취급		장관	국무총리
보존			
차관	우근민	심우영	221
복무감사관	채일병	기획관리실장	
복무담당관	신종	총괄심의관	자
기안	하재춘		협조

제 목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지시 (국무총리지시 제1997-14호)

1. 추석연휴 및 정치상황 등으로 인하여 해이되기 쉬운 복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국무총리지시를 시달하나, 소속공무원에게 주시켜 이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2. 아울러, 산하단체 등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지침을 시달하여 복무자세확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지시 1부. 끝.

받는곳 가 (05~56)

(제 2 안)

받음 받는곳 참조

제 목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 지시 통보

추석연휴 및 정치상황 등으로 인하여 해이되기 쉬운 복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국무총리지시를 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지시 1부. 끝.

받는곳 가(01~04),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 무 총 리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

-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오늘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더 한층 분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성을 발휘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들이 높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과 함께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복무자세 확립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함

1. 현안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 민원업무의 신속·공정·친절한 처리
- 귀성객의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
- 추석 성수품 등 물가안정
- 약간·휴일진료 등 국민불편 해소
-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등

2. 비상대비체제 확립

- 긴급상황에 대비 비상연락체제 유지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정비철저
 - 소속공무원 소재파악 등 비상연락 가능체제 상시 유지
-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각종 사건·사고 대비 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 유지
 -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

3. 경계 및 안전점검 강화

- 당직근무 철저
 - 화재예방 등 보안점검 및 순찰 강화
 - 긴급사태 발생시 당직자 조치요령 등 사전교육 철저
-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 사고 가능분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강화
 - 도로·교량·철도·선박·항공 등 국민이용 집중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철저
 - 기타 각종시설에 대한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

4. 검소하고 깨끗한 추석보내기 실천

- 고유의 미풍양속 보존
- 불우이웃 돋기 솔선수범
- 쓰레기 투기방지 계도
- 과소비·사치풍조 근절
- 금품·선물수수 금지

5. 선거 엄정중립자세 견지

- 제15대 대통령 선거관련,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이나 행동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함.
※ 붙임내용 참조

6. 귀향시 국정이해 제고

- 국정의 주요방향과 부처별 현안사항을 숙지하여 귀향기간중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당부

※ 붙임 :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 예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부.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예시

1997.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이 예시는 입후보예정자(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공직선거입후보예정자)나 정당을 주체로 하는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중 추석을 전후하여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사례임

1. 추석인사등을 명목으로 한 선물등 금품 기타이의 제공행위

■ 정당활동

할 수 없는 사례

- 체육행사등 각종행사를 개최하면서 참가자에게 참가비·경비·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당원수련대회나 단합대회 등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당직자회의, 당원단합대회등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다과·떡·음료나 홍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읍·면·동연락소장급이상의 각급당부의 간부나 유급당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 기타 정당행사시 정당의 경비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유급사무직원 및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이상의 당원에게 세시풍속에 맞는 염가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를 빙자하여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물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개업식·개소식 기타 각종 행사나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등에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체육대회·민속경기대회·경연대회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친목회등 자생단체나 이·미용협회등 각종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추석을 맞이하여 친척·은사등을 방문하는 때에 선물을 하는 행위
- 군민체육대회등 정기적인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 종합주민체육대회, 전래적인 구·시·군단위의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기타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 경로당·노인회관·기타 유·료 양로시설·유료 요양시설 등에 추석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권자에게 추석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떡·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생활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고아원·양로원등 사회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등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종교단체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직무상·업무상 행위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법령이나 조례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일반선거구민에게 식사·선물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상의 범위를 벗어나 관내의 기관·단체 기타 시설·모임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회사등이 주관하는 체육행사·기념행사시 참석 선거권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상근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함)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통·반장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통·반장에게 보상 품을 지급하는 행위
- 국회의원등의 귀향보고회(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과·떡·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기관·회사·단체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선전활동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 귀향인사등을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등을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등을 광고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주관·지배하는 기관·단체·법인·회사등이 기관지·사보·광고·영업안내 팜프렛 등에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자가 추석인사등을 빌미로 선거권자의 모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찾아다니며 지지 또는 반대호소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호별로 방문행위
- 각종단체·모임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단체등의 상설사무소·사업장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선거구안에 상설한 1개소의 연락사무소에 대표자 명의를 표시한 추석인사·귀향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추석인사·귀향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등 선전물을 구·시·군연락소 이상의 당사에 당해 당부의 대표자 명의로 게시·첩부하는 행위

3.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활동

할 수 없는 사례

- 민의수렴, 정책개발자료수집등을 명목으로 각종 현장 방문, 여론주도 총·지역인사 접촉활동 등에 있어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업적 또는 경력을 홍보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등 지지·선전행위
- 의정활동보고를 빙자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를 명목으로 선거권자들이 모인 장소를 찾아가 인사 등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현수막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활동 등 보고회를 고지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의정활동보고서에 단순한 추석인사 내용을 포함하여 게재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에 그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4. 기타 감시 · 단속대상 사례

- 기타 집회나 선전물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행위
-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